#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7년 12월 13일
- 회부일자 : 1997년 12월 13일

다. 상정일자 : 제143회 정기회

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('97. 12. 22) 상정, 질의답변, 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황 옥 )

가.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대행공사 등 턴키(일괄수주방식)공사 심의 업무가 '97년도부터 지방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심의 범위를 보완하여 기술심의 업무에 만전을 기함과,

○ 대통령령 제15441호('97. 7. 21)로 개정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심의대상 공사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, 공공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설계의 부실방지 및 현 실정에 맞는 심의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정으로 심의대상 공사 완화

○ '97년도부터 대행공사 등 턴키공사 심의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됨에 따른 지방위원회 심의범위 확대 조정

○ 심의 위원이 건설기술 심의에 대해 사전심의제도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

○ 심의위원회 사전 서류확인 및 심사에 따른 수당 관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설계심의 내실화

○ 기술심의 신청시 수수료 납부 의무화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및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범위를 보완하려는 개정 조례로서 공공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대행공사 등 턴키공사 심의 업무를 지방에 이관하여 지방심의위원회의 범위를 확대하고,

실질적인 심의를 위하여 현장조사 및 사전 서류확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당 및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 및 신설하는 개정 조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4. 질의 답변 요지

· 건설기술심의 대상이 총공사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조정에 따른 대책

## 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## 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 (참석위원 7인 만장일치)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9. 첨부서류

·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. 신구조문 대비표